

V. 우리나라 리스크 공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금융권의 리스크 공시제도 현황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대한 공시 역시 감독당국의 규제 필요에 의한 공시 및 민간부분의 요구와 활동에 따른 공시로 구분된다. 감독당국의 규제에 의한 공시는 ① 증권거래법규 ② 금융권역별 관련 법규 ③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규 ④ 감독업무수행에 의한 공시로 구분된다. 민간부분의 공시는 금융회사 주주, 애널리스트, 신용평가회사, 기관투자가 등이 각각의 경제적 유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채널에 의한 금융기관 공시사항은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나, IV장 선진금융회사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당부분 유사한 내용이 중복적으로 공시되고 있다.

가. 증권거래법 관련 법규에 의한 공시

증권거래소 상장 및 협회등록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① 발행시장 공시 ② 유통시장 공시 ③ 특수 공시 등과 같은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발행시장 공시에서의 공시내용은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 유가증권 신고서, 안정조작, 시장조성 신고서 등이며, 유통시장공시에서의 공시내용은 정기공시, 수시공시, 공정공시 등이다. 특히 기업의 주주권행사의 지원, M&A의 공정성 확보, 내부자거래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특수공시에서는 합병·영업양수도·분할신고서,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 상황보고, 공개매수신고 등이 주요 공시내용이다.

<표 V-1> 증권거래법 관련 법규에 의한 공시

종류	의의	공시내용
발행시장 공시	유가증권과 발행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 -유가증권 신고서 -안정조작·시장조성 신고서 등
유통시장 공시	투자자에게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완전하게 공시	-정기공시:사업·반기·분기보고서 -수시공시: 주요경영사항공시 -공정공시
특수공시	기업의 주주권행사의 지원, M&A의 공정성 확보, 내부자거래예방	-합병·영업양수도·분할신고서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임원·주요 주주의 주식소유 상황보고 -공개매수신고 등

나. 금융권역별 관련 법규에 의한 공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중금사, 여전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의 금융회사가 금융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를 하고 있다.

<표 V-2> 금융권역별 관련 법규에 의한 공시

구분	공시내용
정기공시	-조직·인력, 재무·손익, 자금조달·운용, 건전성·수익성·생산성 관련 지표, 리스크관리 정책 등
수시공시	- 거액손실·금융사고 발생, 적기시정조치 등

다. 외감법 관련 법규에 의한 공시

외부감사대상인 금융회사³³⁾가 회계처리기준 및 금융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 주석사항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포함된 감

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공시하고 있다.

라. 금융감독원의 감독업무수행에 의한 공시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대상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통계, 분석자료 및 감독조치내용을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공표하고 있다.

<표 V-3> 금융감독원의 감독업무 수행에 의한 공시

구분	공시내용
금융통계정보 시스템 (FISIS)	-B/S, P/L, 자금조달·운용, 자본적정성·건전성·수익성·생산성 관련 지표, 임직원·점포 현황
경영분석자료	-금융회사의 영업실적, 자기자본비율 현황, 자산건전성 현황(부실채권, 연체율), 유동성(자금조달 동향)
감독조치내용	-조사, 감리, 검사결과 및 그에 따른 감독조치 내용

<표 V-4> 금융회사 공시제도 개선방안 추진경과 및 세부내용

추진경과	세부내용
금융회사가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2004.11)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련 공시항목 확대 -공시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공시목적별 공시내용 재정비
금융회사 공시제도 개선 T/F 구성(2004.12)	-
금융회사 리스크관련 공시항목확대 (2004.12~2005.1)	-작업반별금융회사를 대상으로 survey 실시 -survey 결과에 대한 각국 감독검토
공시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금융회사에 대한 벌점관리제도 도입검토
공시항목별 공시내용 재정비	-통일공시기준의 활용도 제고를 우선 추진

33)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최근 금융감독원은 공시강화 차원에서 『금융회사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리스크관련 공시 확대방안을 마련·추진 중에 있다(<표 V-4>참조). 특히 리스크관련 공시의 확대 대상은 ①합동작업반의 리스크 부문 공시 권고 사항 ② 신BIS협약 pillar 3에 제시된 공시기준 등을 근거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2.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제도 현황

가.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의한 공시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에 의거하여 통일적·체계적으로 정한 보험회사의 경영공시체계라 할 수 있다.³⁴⁾ 이와 같은 경영공시는 보험소비자에게 금융회사의 경영상태, 활동내용 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적기에 공시함으로써 보험회사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경영공시의 근거 및 기준 등은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보험업법 제6조의4(경영공시)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감독규정 제51조(경영공시) 1항에서는 “보험사업자는 법 제6조의4 규정에 의하여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공시하되, 다만 분기별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임시결산일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에 대해서는 생명보험협회장 및 손

34) 경영통일공시의 경우 공시의 종류, 횟수, 주기, 기간 등 공시제도의 기본사항에 대하여는 금융업종별로 정형화하였으나, 구체적 공시항목은 금융기관별 특색을 고려하여 금융업종별로 일부 조정되었음.

해보험협회장이 정하는 보험경영통일기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자율공시 차원에서 공시항목 및 방법 등을 양 협회에 일임하고 있다. 2001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영통일공시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영상태를 공시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경영상태가 완전하고도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공시자료를 작성하도록 규정(제3조 일반원칙)하고 있다.

<표 V-5> 보험회사의 경영통일공시 기준

구분	내용	특징
근거	보험업법 제6조의 4(경영공시)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
	보험업 감독규정 제7-44조	보험사업자는 법 제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공시
	보험사 경영통일 공시기준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 의거, 보험사 경영통일공시기준 마련
공시 원칙	-공시자료는 보험계약자, 주주 및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고 개인의 사적 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됨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시하여서는 안됨 -공시자료는 회사의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됨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적 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공시 비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함	
공시 대상	정기경영공시, 수시경영공시	외국 국내지점 제외(일부항목)
시기, 주기	-정기공시 : 연 4회(분기별) -수시공시 : 해당사유 발생 즉시 작성	

즉 ① 공시자료는 보험계약자,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 ②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안된다는 점 ③ 공시자료는 생명보험협회의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점 ④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적 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공시비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 V-6>은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영공시 현황 및 체계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은 ① 일반현황 ② 경영실적 및 지표 ③ 재무상황 ④ 위험관리 ⑤ 기타경영현황 ⑥ 재무제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험관리는 개요 이외에 6개의 리스크부문, 즉 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금리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일반적인 리스크라 할 수 있는 보험, 신용, 시장, 금리리스크 이외에 유동성리스크 및 운영리스크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동성리스크의 포함은 IMF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보험회사의 대량해약사태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양적으로 평가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운영리스크의 포함은 최근 임직원의 법규준수가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는 12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자산 위주의 항목이어서 부채(책임준비금)에 대한 정보가 빈약한 실정이다. 자산 항목에 대한 내용도 상세설명이 배제된 채 표 위주로 작성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다.

<표 V-6> 보험회사의 경영공시 현황 및 체계

	세분류	세부 내용
연관 방 향	-경영방침, 연혁,주이, 조직도, 임직원 현황, 영 업,모집조직 현황	
	-자회사	연결대상자회사, 비연결자회사
경 영 실 적	-자본금,대주주현황,주식 소유현황,계약자배당,주주 배당,주식매수선택권 부 여내용,보험계약/대출거 래유의사항	
	-손익발생원천별 실적	보험부문, 투자부문, 특별계정부문
지 표	-경영지표	자본적정성(1),자산건전성(2),수익성(5),유동성(2),생산성(2),기타(2)
	-신용평가등급	
재 무 상 황	-대출금운용	대출금운용원칙,담보별대출금,업종별대출금,용도별대출금,중소기업대출금
	-유가증권투자 및 평가손익	일반계정(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지분법적용투자주식), 특별계정
	-부동산보유현황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보유현황
	-책임준비금	일반계정, 특별계정
	-의화자산 및 부채	형태별현황, 국가별 주요자산운용현황,포지션현황
	-대손상각 및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일반/특별계정),대손상각액(일반/특별계정)
	-부실 및 무수익대출	부실대출현황, 거액부실대출현황
	-과생금융상품 현황	과생금융상품거래관련 주요영업현황,장외거래의 잔존만기 및 신용환산액, 과생금융상품거래손실거래현황,신용과생금융상품거래현황, 구조화증권투 자현황
	-자산증권화현황	목적, 운영현황
	-보험계약현황	일반계정, 특별계정
	-재보험현황	수계,출계
	위 험 관 리	-개요
-보험위험관리		개념, 관리대상, 관리방법, 측정 및 평가방법
-신용위험관리		개념, 관리방법, 신용위험관리대상 익스포저현황, 대출채권의 연체현황, 신용등급별 유가증권 익스포저현황
-시장위험관리		개념, 관리방법, 시장위험관리대상 익스포저현황(난의계정포함)
-유동성위험관리		개념, 관리방법, 유동성비율/유동성 갭, 보험료적립금/대출금/유가증권, 크레딧약정 현황
-금리위험관리		개념, 관리방법, 금리성 자산 및 부채현황
기 타 영 향	-운영위험관리	개념, 관리방법
	-자회사경영실적	자회사 재무 및 손익현황, 자회사 관련 대출채권 현황
	-타금융기관과의 거래내역	타보험,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의 조달, 운용현황
	-내부통제	내부통제기구현황, 감사기능, 감사역할, 내부감사부서 감사방침, 감사종류 및 감사빈도
	-기관경고 및 임원문책사항	
	-수시공시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대주주발행주식의 취득, 자회사의 추가, 타법인 출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취득 현황, 주총소집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업목적변경, 현금배당결의, 감사보 고서제출, 회계 처리기준변경, 정기주주총회결의사항, 외부감사인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선임 및 사임 등
재 무 제 표	-임직원 대출잔액, 사외이 사 등에 대한 대출	
	-기부금 내역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부금현황, 기타외부에 대한 기부금현황
	-민원발생 현황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사항, 연 결재무감사고서,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연결재무제표주 석사항	

우리나라의 경영공시에서 나타난 리스크 공시는 <표 V-7>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공시대상 측면에서 보면 리스크 공시는 정기경영공시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시경영공시에는 리스크관련 공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공시형태 측면에서 보면 비정형화된 공시형태 즉 자율공시를 지향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경영통일공시기준 부합 여부만 고려한 후 보험회사가 자율적인 방법으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공시특징 측면에서 보면 준(準)비교공시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율공시체계를 지향함으로써 보험회사간 리스크관리수준 비교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리스크 공시 범위는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채, 리스크별로 포괄적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유용한 공시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리스크 공시체계는 리스크인식·측정·평가처럼 수직적 리스크 공시체계를 갖기보다는 보험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리스크유형별로 수평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V-7> 우리나라 보험회사 리스크 공시 내용 및 특징

대상	정기경영공시	수시공시에는 리스크 공시 부문 없음
형태	자율공시 (비정형화된 공시)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관리방법 등 기술 (경영통일공시기준 부합여부만 고려)
특징	준(準) 비교공시	각사의 리스크 공시수준 비교불가
범위	포괄공시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공시
체계	수평적 공시체계	보험, 시장 등 리스크유형별 공시 지향

또한 <표 V-8>에서와 같이 리스크관련 공시 항목별 서식 측면에서 보면 별도서식을 제정한 공시항목은 ① 신용위험관리대상 익스포져 현황(대출채권의 현황, 신용등급별 유가증권 익스포져 현황) ② 시장위험관리대상 익스포져 현황 ③ 자산·부채의 잔존기간별 잔액 ④ 금리성 자산 및 부채현황 등과 같은 양적 정보이다. 반면, ① 보험위험관리 ②

유동성위험의 개념 및 관리방법 ③ 금리위험 관리 ④ 운영위험관리 등은 별도서식을 제정하지 않은 공시항목으로서 주로 질적 공시를 유도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지나치게 축약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표 V-8> 리스크관련 공시의 항목별 서식

서식 제정 공시항목 (별도 서식을 제정한 항목)	서식 미제정 공시항목 (별도 서식을 제정하지 않은 항목)
-신용위험관리대상 익스포져 현황 ·대출채권의 현황 ·신용등급별 유가증권 익스포져 현황 -시장위험관리대상 익스포져 현황 -자산·부채의 잔존기간별 잔액 -금리성 자산 및 부채현황	-보험위험관리 -유동성위험의 개념 및 관리방법 -금리위험 관리 -운영위험 관리

나.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한 공시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등 공시의무자가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은 공시자료를 전산매체를 통하여 관계기관과 일반투자자에게 전송하는 종합기업공시시스템이 DART 시스템이다.

금융감독원은 공시서류를 제출하는 기업과 이를 열람하는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시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DART) 전용통신망을 구축하고 소정의 테스트를 거친 후 2005년 5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한 공시체계를 살펴보면 <표 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공시:3공시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정기공시, 수시공시, 기타공시, 지분공시, 특수공시, 발행공시, 감사공시 등과 같은 7공시사항과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사항,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사항 등 3공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V -9> DART에 의한 공시 현황 및 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부사항	
정기공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록법인결산보고서	-	
수시공시	-주요경영사항권고	채무구조변경관련,기업경영환경변경관련,대규모손실관련,채권채무관계변동관련,투자 및 출자관련, 수익구조변경관련, 주식매수선택권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신고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	-	
기타공시	-안정조작 -시장조성 -금감위 등록/취소	-	
지분공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임원/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 -공개매수	-	
특수공시	-자산유동화 -자기주식취득/처분 -신탁계약체결/해지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교환이전	-	
발행공시	-유가증권신고(주식)	유가증권신고서, 예비/간이/사업설명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유가증권신고(사채)	유가증권신고서, 일괄신고,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유가증권신고(주식워런트증권)	-	
	-유가증권신고(주식연계증권)	-	
	-유가증권신고(파생결합증권)	-	
	-유가증권신고(기타)	-	
	-소액공모(주식) -소액공모(사채) -소액공모(주식워런트증권) -소액공모(주식연계증권) -소액공모(파생결합증권) -소액공모(기타) -호가중개시스템상의 소액매출 신고	-	
감사공시(3)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결합감사보고서	-	
공시사항	유가증권시장 본부	-수시공시 -시장조치/안내 -공정공시 -지분공시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내부거래 등	-
	코스닥시장 본부	-수시공시 -시장조치/안내 -공정공시 -증권투자회사	-
7공시·3공시사항	46 공시항목		

정기공시의 주요항목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록법인 결산보고서 등 4가지 항목, 수시공시의 주요 항목은 주요 경영사항 권고,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신고,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등 3가지 항목, 기타 공시의 주요 항목은 안정조작, 시장조성, 금감위 등록 및 취소 등 3가지 항목, 지분공시의 주요항목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임원 및 주요주주소유 주식보고서, 공개매수 등 3가지 항목, 특수공시의 주요항목은 자산유동화,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 신탁계약 체결 및 해지,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교환이전 등 3가지 항목, 발행공시의 주요 항목은 유가증권신고(주식), 유가증권신고(사채) 등 12가지 항목, 감사공시의 주요항목은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결합감사보고서 등 3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사항은 수시공시, 시장조치 및 안내, 공정공시, 지분공시 등 4개 항목,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사항은 수시공시 및 시장조치 및 안내, 공정공시, 증권투자회사 등 4개 항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사항은 대규모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7공시·3공시사항은 46개 세부공시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시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는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의 경영정보자료와 금융산업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DB화한 것으로, 일반이용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동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회사별 경영통계자료 및 자료의 시계열 자료 이용이 가능하다. 이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대국민 금융통계정보 서비스기능을 확충하고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상태에 대한 시장감시기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4년 1월부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정보는 크게 금융회사 경영정보와 금융통계월보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회사의 경영정보는 금융감독원이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제출받고 있는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정리한 자료로서 <표 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현황, 재무현황, 주요 경영지표, 주요 영업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V-10>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공시내역 및 특징

	경영정보	금융통계월보
F I S I S 구 성 내 용	-일반현황 ·임직원 및 모집인 현황 ·점포 및 대리점 현황	-총괄 ·보험사업의 주요지표(I) ·보험사업의 주요지표(II) ·보험사업의 주요지표(III)
	-재무현황 ·요약대차대조표(자산 : 전체) ·요약대차대조표(부채/자본: 전체) ·요약대차대조표(자산: 특별 a/c) ·요약대차대조표(부채/자본: 특별a/c)	-생명보험 ·생명보험 경영효율 ·생명보험 회사별 사업수지 ·생명보험 대차대조표 ·생명보험 손익계산서 ·생명보험 보험료수입 ·생명보험 종류별 보험료 수입 ·생명보험 사업비 ·생명보험 보험금,환급금, 배당금 ·생명보험 종류별보험금,환급금,배당금 ·생명보험 계약성적 ·생명보험 기능별 사업상황
	·요약손익계산서(전체) ·요약손익계산서(특별 a/c)	-손해보험 ·손해보험 경영효율 ·손해보험 대차대조표 ·손해보험 손익계산서(I) ·손해보험 손익계산서(II) ·손해보험 손익계산서(III) ·손해보험 종류별 경과 손해율 ·손해보험 종류별 사업실적(I) ·손해보험 종류별 사업실적(II) ·손해보험 종류별 사업실적(III) ·손해보험 회사별 사업수지
	-주요경영지표 ·자산건전성분류 ·자산건전성비율 ·대출채권 연체현황 ·수익성 ·유동성	
	-주요영업활동 ·사업실적표	

이용자는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권역의 개별 금융회사별로 경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통계월보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간하는 책자인 e-book 형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3. 보험회사 리스크 공시제도의 문제점

가. 리스크관리부문의 공시 미흡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는 크게 경영공시, 전자공시, 통계공시라는 3가지의 공시체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리스크 공시의 80% 이상은 경영공시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보고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의 리스크 공시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공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외국의 경우 증권거래법에서 사업보고서 내에 리스크관리에 대한 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³⁵⁾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에서는 상장·등록기업 대상 사업보고서의 작성을 서술식 기재로 변경하고, “기업 및 경영에 대한 진단과 분석(MD&A)”의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당분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리스크에 관한 공시를 확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35)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3(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1. 회사의 목적·상호 및 사업내용 등 회사의 개황,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관계회사 등의 현황, 3.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4. 주식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7.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 8.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우 외견상 재무성과, 회계지침, 주 업무 및 지배구조 등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또는 경영공시자료를 통해 대부분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부채(책임준비금) 부문과 리스크관리 부문의 공시는 국제감독기구의 요구사항 및 선진금융회사의 사례와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리스크 공시가 보험계약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포지티브시스템이 아닌 네거티브시스템체계로의 전환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최근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네거티브시스템체계로의 리스크 공시체계 전환이라는 리스크 공시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리스크 공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나. 공시내용의 양·질 미흡

현행 경영통일공시기준 또는 사업보고서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공시사항은 양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미흡하며, 리스크관련 공시사항은 개괄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어 질적으로도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등 주요 리스크에 대한 양적 정보가 아직도 국제감독기구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리스크 익스포져 현황, 성격 및 관리방법뿐만 아니라 리스크익스포져의 추이, 향후전망 등 양적 정보가 제공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한 설명 등의 질적 정보 공시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리스크 공시 실태 측면에서 볼 때 양적 정보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심도 있는 질적 정보의 공시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보험시장의 불확실성과 개별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변화 등에서 기인하는 제반 리스크 관련 정보는 과거의 재무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양적 정보에 비해 리스크관리의 모니터링 측면에서도 보다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 사례에 준하는 질적 정보의 제공이 요구된다.

다. 리스크 공시의 유용성 부재

우리나라의 리스크 공시는 포괄공시, 자율공시, 준비보고공시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리스크 공시의 비교가능성,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선진국의 리스크 공시 수준과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실질적으로 개별 보험회사의 리스크실태 및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검증할 수 있는 유용한 리스크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보험회사 고유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공시가 매우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용도 매우 추상적이고 구체적 항목도 제외된 경우가 많다. 특히 DART에 의한 공시는 일반기업과 유사한 서식에 의한 양적 정보에 치중하고 있어 금융회사 고유의 리스크를 공시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어, 리스크 공시의 유용성이 높지 않은 문제가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³⁶⁾에 의하면, 보험회사에 대한 공시요청 사항은 ① 보험회사 이원분석 현황, ② 보유 유가증권의 신용등급별 신용익스포저 현황, ③ 이자율 변동 관련 리스크 현황, ④ 보험회사 지급준비금의 적정성, 가격의 적정성 및 손해율, ⑤ 리스크 익스포저의 성격, 리스크 규모 추이, 향후 전망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시 내용은 이러한 구체적인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유용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36)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공시제도 개선 T/F, "금융회사 리스크관련 공시 확대 방안", 2005.3.